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자격요건을 현실화하고, 새만금 지역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건축위원회 개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과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개의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7조제1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52조제2항 중 “30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에 관

한 학식 또는”을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외국인투자비율의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생략)

② (생략)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생략)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⑥ (생략)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70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신 설>

⑧ · ⑨ (생 략)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
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
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87